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8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3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2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5~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3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기업 본사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제60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음.

제61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이전(제60조) 및 법인본사이전(제61조)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 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제60조)	법인본사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제61조)
요건	대상법인	대도시 안 공장에서 사업영위 법인 *사업기간 불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본사를 둔 기간 불문
	이전요건	대도시→대도시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1년(기존공장 취득) 또는 3년(신규공장 준공) 내 이전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3년 내 이전
	업종요건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이전비율 -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또한, 수도권에 공장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제63조) 및 본사(제63조의2)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
요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의 사업영위 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업종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투자 및 고용	해당 없음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본사 이전 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 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
세액감면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성장촉진지역등의 경우 12년간 감면 (10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내의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10년간 감면(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등의 경우 7년간 감면 (5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한도		없음	

□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2,052억원에서 2024년 79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본사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3,032억원에서 2024년 384억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0조)	0.1	1	2	1	1	1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1조)	2	5	7	5	5	5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63조)	2,052 소득세 (253) 법인세 (1,799)	1,192 소득세 (264) 법인세 (928)	1,279 소득세 (249) 법인세 (1,029)	799 소득세 (195) 법인세 (604)	775 소득세 (141) 법인세 (634)	610 소득세 (16) 법인세 (594)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63조의2)	3,032	2,993	727	384	490	50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이천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 대도시 밖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3조	공장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5년간 100% + 2년 50% ¹⁾ 7년간 100% + 3년 50% ²⁾ 10년간 100% + 2년 50% ³⁾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1)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2)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으로 이전

3)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은 제외)으로 이전

☐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의 본사	수도권 →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대도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¹⁾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²⁾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³⁾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나.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권영진의의원안, 윤영석 의원안(3),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 안(2), 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0조)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수도권 밖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기장군·달성군·군위군, 산업단지 제외)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특례: 공장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안)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 ○ 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현행과 같음) ○ <u>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u>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u>2028. 12. 31.</u> (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①의 금액에 ②와 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①) -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②) -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③)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																																				
<table><tr><th></th><th>낙후지역¹</th><th>그 외 지역</th></tr><tr><td>수도권²</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³</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중규모도시⁴</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table>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table><tr><th></th><th>낙후지역</th><th>그 외 지역</th></tr><tr><td>수도권</td><td>5년 100% +3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5년 100% +3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4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중규모도시</td><td>10년 100% +5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5년 50%</td><td>7년 100% +4년 50%</td></tr></table>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7년 100% +2년 50%	7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감면개시기한: 5년→7년(주진우의원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u>2028. 12. 31.</u> (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주진우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정부안, 주진우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한병도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37), 김정재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406), 김형동의원안 2025. 7. 7. 발의(의안번호 11306), 권영진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94), 윤영석의원안 2025. 7. 23. 발의(의안번호 11674), 윤영석의원안 2025. 7. 25. 발의(의안번호 11717), 윤영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69),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1), 강명구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77), 주진우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2), 강명구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2993)

□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확대하고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정부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낙후지역⁴⁾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은 50%의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 8년간 감면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

4)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등 수도권 연접지역 또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 중규모도시와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혜택이 적용되는데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최초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진우의원안은 본사이전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개시기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2023년 기준 52.3%로 전국에서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51,751	515
수도권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26,304	2,215

자료: 통계청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명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993	1,046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1.3%	52.1%	52.2%	52.9%	52.8%	52.8%	52.3%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감면기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첫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2.06%(사업체 수 기준), 64.6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⁵⁾, 2,764개 상

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103개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며 경기도(807개)와 인천광역시(96개) 등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약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각종 특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동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기업들의 높은 사전 인지도(본사 78.0%, 공장 65.4%)하에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이전 결정에 기여(본사 46.4%, 공장 51.5%)한 것으로 분석되었고⁶⁾, 기업성과(투자, 고용 및 생산성 증대)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사 이전 특례는 기업의 투자 개선, 공장 이전 특례는 생산과 투자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⁷⁾

또한, 조세감면 혜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용이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세특례가 전체적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⁸⁾

5) 통계청,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6)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7)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8)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유사 조사특례 제도 대비 가장 장기간의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감면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각종 지역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위기지역(7년)을 제외하면 최대 5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 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레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 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수련시설사업 · 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둘째, 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감면 기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⁹⁾

9)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 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¹⁰⁾된다는 점에서 적용 배제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수혜기업 1,584개 중 이전한 공장의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¹¹⁾ 경기도(1,116개)로 이전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206개), 충청남도(85개), 충청북도(56개) 순서로 나타나 수도권 인근으로 공장 이전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¹²⁾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10)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11) 단,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함.

12)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지역별 공장 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수]

(단위: 개)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강원도	22	10	1	11
경기도	1,116	75	840	201
경상남도	4	1	0	3
경상북도	10	3	0	7
광주광역시	4	1	1	2
대구광역시	3	2	0	1
대전광역시	12	3	4	5
부산광역시	2	1	1	0
서울특별시	17	15	2	0
세종특별자치시	5	2	2	1
울산광역시	6	3	0	3
인천광역시	206	16	157	33
전라남도	12	2	1	9
전라북도	13	4	2	7
제주특별자치도	3	1	1	1
충청남도	50	2	4	44
충청북도	56	7	4	45
전체	1,584	206	1,012	366

주: 2016년~2023년의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다. 감면한도 신설 및 사후관리 도입 등(정부안, 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현 행			개정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신 설> ○ 적용기한: 2025. 12. 31.			○ 감면한도(정부안):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 사후관리(정부안): 세액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정 ○ 적용기한: 2028. 12. 31.(정부안) ○ 시행일: 2026. 1. 1. (정부안) ○ 경과조치(정부안):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규 정 적용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종전규 정 적용 -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이전계획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①의 금액에 ②와 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①) -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②) -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③)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서를 제출한 경우 -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계약 체결 포함)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 공장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u>

현행			개정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주진우의원안) <table><tr><td></td><td>낙후지역</td><td>그 외 지역</td></tr><tr><td>수도권</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7년 100% +2년 50%</td><td>7년 100% +2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9년 100% +3년 50%</td><td>7년 100% +2년 50%</td></tr><tr><td>중규모도시</td><td>9년 100% +3년 50%</td><td>7년 100% +2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table> *감면개시기한: 5년→7년(주진우의원안) ○ 감면한도(정부안):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 포함)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 ○ 사후관리(정부안): 세액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정 ○ 사후추정 요건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7년 100% +2년 50%	7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7년 100% +2년 50%	7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신설> <신설> ○ 사후추정 요건																							

현행	개정안
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②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u>사무소</u>를 둔 경우 ④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u><신 설></u> <u><신 설></u> ○ 적용기한: <u>2025. 12. 31.</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u>사무소 또는 사업집행부서</u>를 둔 경우(주진우 의원안)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인이 <u>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u>(주진우의원안) ⑥ 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u>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100분의 25 이상이 수도권 안의 사무소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u>(주진우 의원안) ○ 적용기한: <u>2028. 12. 31.</u> (정부안) <u>2030. 12. 31.</u> (주진우의원안) ○ 시행일: 2026. 1. 1. (정부안, 주진우의원안) ○ 경과조치(정부안):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이전계획

현 행	개정안
	서를 제출한 경우 -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계약 체결 포함)하거나 본사를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 본사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적용례(주진우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주진우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2)

□ 개정안은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전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고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공장이전 세액감면(제63조)과 본사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 제도의 감면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70%에 이전본사 또는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을 곱한 값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정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진우의원안은 본사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 제도의 사후추징 사유에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집행부서를

둔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 및 본사 이전 후 2년 이내에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이 수도권 안의 사무소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인세 감면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본 조세특례와 관련한 감사원의 2020년도 「조세지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액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72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조 1,58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감면받은 금액이 1조 3,228억원으로 전체 감면규모의 60%를 차지하였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 8,361억원 중 2개 주식회사가 감면받은 세액이 7,641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감면세액의 집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본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유사제도의 조세감면 혜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감면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기업 설문 실시한 결과 수혜기업

(41개)의 63.4%와 비수혜기업(106개)의 84%가 찬성한 바 있음.¹³⁾

둘째, 현행 제도의 경우 지방 이전 후 감면세액 산정 시 이전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감면한도를 설정하거나 실질적인 이전지역에서의 근무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장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 경우 별도의 투자 및 고용요건이 없고, 본사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의 경우 감면요건으로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에 대한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나¹⁴⁾,

1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1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자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본 조세특례와 관련한 감사원의 2020년도 「조세지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72개 법인의 지방이전 인원은 연평균 18,767명이고, 1인당 법인세 감면액이 1,877만원인데, 이 중 11개 법인은 지방인원 1인당 연평균 감면세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 11개 법인 중에서 일반법인 6개의 연평균 근무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하였음.

셋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낙후지역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20명 이상 고용창출 시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고,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낙후지역에서의 고용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⁵⁾

넷째, 정책대상 기업 중 이전한 기업은 극히 일부이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상당수는 조세감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

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15) 감사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 설정 필요”, 조세지출제도 운용실태, 2020. 5. 26. p. 3

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면한도를 신설하더라도 기업의 지방이전에 제한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¹⁶⁾이 있음.

본 조세특례와 관련한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전기업의 약 8.7%(제63조), 14.7%(제63조의 2)만이 동 제도가 없었다면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한 비중이 조세감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음¹⁷⁾.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방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 약화라는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투자 유인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둘째, 정부안은 감면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청년 등의 경우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는 유사 제도¹⁸⁾와 달리 투자금

16)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심층평가 III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20.9.

17)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심층평가 III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20.9.

18)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위 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3(기획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액에 대한 비율을 70%로 상향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비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감면한도를 상대적으로 크게 규정하였다고 설명함.

본사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지만, 공장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 경우 신고기업 1,584개 중 이전한 공장의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¹⁹⁾ 경기도(1,116개)로 이전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206개), 충청남도(85개), 충청북도(56개) 순서로 나타나 수도권 인근으로 공장 이전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²⁰⁾

[지역별 공장 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수]

(단위: 개)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강원도	22	10	1	11
경기도	1,116	75	840	201

19) 단,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함.

20)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경상남도	4	1	0	3
경상북도	10	3	0	7
광주광역시	4	1	1	2
대구광역시	3	2	0	1
대전광역시	12	3	4	5
부산광역시	2	1	1	0
서울특별시	17	15	2	0
세종특별자치시	5	2	2	1
울산광역시	6	3	0	3
인천광역시	206	16	157	33
전라남도	12	2	1	9
전라북도	13	4	2	7
제주특별자치도	3	1	1	1
충청남도	50	2	4	44
충청북도	56	7	4	45
전체	1,584	206	1,012	366

주: 2016년~2023년의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참고로 정부는 2020년에 감면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34)」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적용례²¹⁾를 규

정하여 기존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이전한 기업의 감면혜택이 축소되는 등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세소위 논의과정을 거쳐 감면한도를 신설하지 않은 바 있음.²²⁾

셋째, 주진우의원안은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집행부서를 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거나, 본사 이전 후 2년 이내에 이전본사 근무인원

21) 개정안 부칙

제9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연도에 대하여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제10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연도에 대하여 종전의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에서 제외한다.

22) 본 개정안(정부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정부안 부칙

제2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 25% 이상이 수도권 안 사무소로 이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사업집행부서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주주총회 등을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현행법 하에서도 감면대상 소득 산정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을 반영 중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주주총회 개최장소나 본사·지점별 인사관리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는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 신설(이만희의원안(2))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감면율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 2년간 50%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이전 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현행	개정안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감면대상: ①×②×③ -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 - ②: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 - ③: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 ○ 감면율 -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u>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이전 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100% + 2년간 50%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만희의원안 2025. 2. 19. 발의(의안번호 8280)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이하 “농촌특별재난지역이전기업”) ① 공장시설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 ② 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현 행	개정안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감면율: 최초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28. 12. 3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부지를 2028. 12. 31.까지 보유하고 202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031. 12. 31.) ○ 사후관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3년 이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③ 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이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3신설) ○ 대상: 농촌특별재난지역이전기업 중 법인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특례: 공장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적용기한: 2025. 12. 31. ○ 중복적용 배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과 중복적용 배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 추계과세기 미적용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 관련 최저한세 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만희의원안 2025. 6. 23. 발의(의안번호 11012)

□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
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31호)」(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마
찬가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또
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거나(의안번호 8280호),

내국인이 공장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60조²³⁾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농촌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하려는 것임(의안번호 11012호).

□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
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
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
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
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 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안번호 8280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을 하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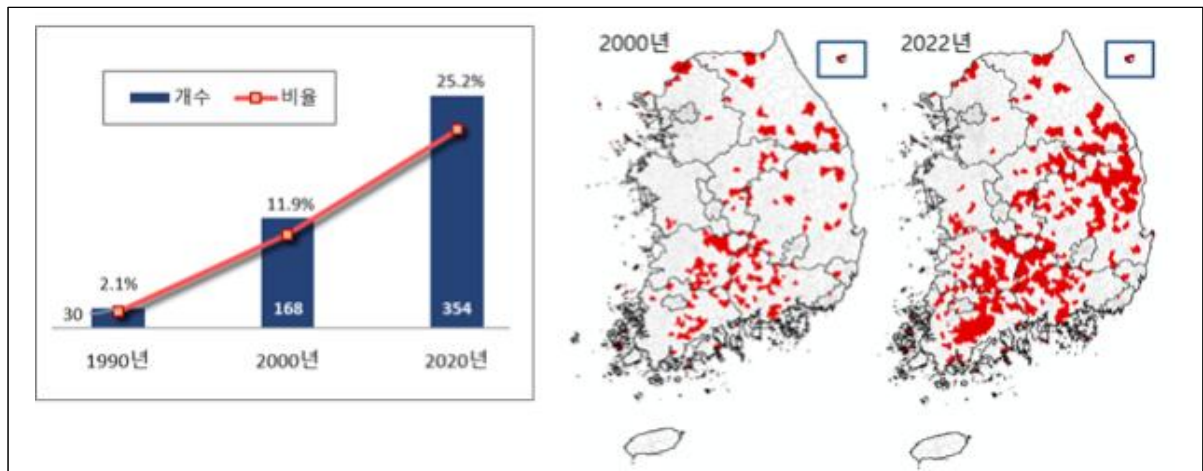
또한, 개정안(의안번호 11012호)은 농촌구조전환지역 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을 하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분할 산입 특례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는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농촌 이전을 장려하고 농촌소멸 및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려

는 취지로 보임.

현재 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심화에 따라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인구 2천명 미만의 읍·면 비중이 1990년 2.1%이었던 것에 반해 2000년에는 11.9%, 2020년에는 25.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 공동화 진행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²⁴⁾.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현황(2000년~2020년)】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매년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 11.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765	516	51,836	516	51,745	515	51,673	514	51,713	515
수도권	25,851	2,179	26,021	2,193	26,069	2,196	26,086	2,197	26,190	2,206
수도권 비중	49.94%		50.20%		50.38%		50.48%		50.64%	

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자료: 통계청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52.33%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5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2.18%	52.91%	52.83%	52.79%	52.33%

주: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 선정된 이후에 조세특례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구 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기준이나 전체 지정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세수효과 및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현재 개정안의 문언만으로 어떤 지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예측이 곤란하여 지정기준 등이 구체화된 이후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인구 감소지역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가가 많은 경상도와 전라남도 총 64개 시·군·구 중 42개(67%)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대부분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소멸지역과 중복될 것으로 보여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 분포】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	관할 읍·면	
		개수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8	1.0
인천	강화군, 옹진군	20	2.3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가평군, 연천군	16	1.8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81	9.2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58	6.6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103	11.8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20	13.6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82	20.8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53	17.5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35	15.4
제주	-	-	-
총계	89개	876	100

주: 밑줄 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촌(읍·면)지역이 없는 시·군·구를 의미함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

셋째, 개정안(제11012호)에 따르면 농촌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특례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농촌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특별재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됨.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
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경우는 감면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²⁵⁾ 등을 참고
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
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25)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